

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2조, 동법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□ 대상투자신탁 :

펀드명	약관 변경	설명서 변경
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1-1 호	○	
PCA 글로벌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유러피언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1-1 호	○	
PCA 유러피언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글로벌 기초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퇴직연금 글로벌 리더스 40 혼합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코리아 국공채 채권모투자신탁 제 1-1 호	○	
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모투자신탁 제 P-1 호	○	
PCA 아시안 리더스 주식형 자투자신탁 제 P-1 호	○	○
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 A-1 호	○	○
PCA 아시아 인프라 주식자투자신탁 제 A-2 호	○	○
PCA 이머징 아시아 주식자투자신탁 제 H-1 호	○	○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모투자신탁 제 1-1 호	○	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일본대표기업 주식자투자신탁 제 1-2 호	○	○
PCA 일본대표기업 채권혼합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코리아 인컴 채권모투자신탁 제 1-1 호	○	
PCA 중국 주식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인도 주식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친디아 주식자투자신탁 제 1-1 호	○	○
PCA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주식투자신탁 제 A-1 호	○	○
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 A-1 호	○	○
PCA 다이나믹 자산배분 파생상품자투자신탁 제 A-2 호	○	○
PCA 뉴실크로드 재간접투자신탁 제 1-3 호	○	○

□ 공 시 사 유 : 약관 및 설명서 변경

□ 변 경 내 용 :

- 1)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
- 2)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
- 3) 자투자신탁 약관 제37조(투자한도) 단서조항 변경

□ 변 경 시 행 일: 2008년 12월 19일

□ 기 타 : 변경 후 약관 및 설명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